
2018년 친환경 축산물 인증 농가 순회교육 계획

2018. 5. 29.



(사)한국친환경인증기관협회

목 차

1. 교육목적 및 추진방향	1
2. 교육사업 개요	1
3. 세부 추진계획	2
4. 교육장소 약도	5
5. 부록(농관원고시)	23

1 교육목적 및 추진방향

□ 친환경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한 동물용의약품 사용 제한 등의 강화된 인증기준 시행('18.1.) 준수를 위한 인증농가 교육 필요

○ 축산물 인증기준 항목 : 일반원칙, 사육장 및 사육조건, 자급사료 기반, 가축의 선택, 번식 방법 및 입식, 전환기간, 사료 및 영양 관리, 동물복지 및 질병 관리, 운송·도축·가공과정의 품질관리, 가축분뇨의 처리 등 (부록 참조)

○ 인증농가에 강화된 인증기준 개정 내용을 전달하여 인증품 생산관리 및 출하요령 등 인증관리능력 배양

* 축산물 인증농가 : ('14) 8,492호 → ('15) 8,158 → ('16) 8,779 → ('17) 8,207

* 유기축산물 및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기준을 강화(2018.1.1.부터 시행)

－ 유기·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기준 강화(시행규칙 별표 3 및 별표 11) －

- 1) (유기)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한 경우에 휴약기간의 2배와 전환기간 중에서 긴 기간이 지나야 유기축산물로 인정
- 2) (무항생제) 분만, 포유, 거세 등의 한정적인 경우에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한 경우에만 휴약기간 2배 경과 시 무항생제 축산물로 인정

2 사업 개요

□ 교육대상 및 회수

○ 교육대상 : 친환경축산물 인증농가 또는 인증희망 농가

○ 교육회수 및 인원 : 18회 약 2,300명

* 교육인원은 축산물 인증건수 8,207호 약 30% 수준이며, 제주는 농관원이 실시

□ 주요 교육내용

○ 친환경 인증제 추진방향, 친환경 인증기준 해설 및 인증관리 요령 등

□ 교육기간 : 2018. 6. 19 ~ 2018. 7. 26

3 세부 추진계획

□ 교육시간 및 과목 : 3시간, 2과목

시간	과목명	주요내용	강사
13:00~13:30 (30분)	교육 등록	- 교육 참석자 등록	친인협회
13:30~14:30 (60분)	친환경 인증제 추진 방향	- 축산물 인증제 추진현황 및 친환경 인증 정책방향	농관원 (본원·지원)
14:30~16:30 (120분)	친환경 인증기준 해설 및 인증신청·관리 요령	- 규칙, 고시의 인증기준 해설 - 인증신청서 작성요령 - 인증품 생산관리 및 표시요령	인증기관

* 전문 강사진으로 교육교재 작성하고, 강의는 농관원, 인증기관의 심사원 등

□ 지역별 교육개요

○ 교육수요에 따라 지역별 순회교육

도별	인증농가수	교육회수	계획인원	교육지역
경기	1,723	3	520	평택(6.19), 포천(6.21), 이천(6.22)
강원	524	2	160	춘천(6.20), 평창(6.27)
충북	614	2	180	청주(6.28), 충주(6.29)
충남	651	2	200	대전(7.3), 아산(7.4)
전북	803	2	240	전주(7.5), 정읍(7.6)
전남	1,697	3	500	순천(7.20), 광주(7.25), 강진(7.26)
경북	900	2	270	대구(7.10), 안동(7.11)
경남	766	2	230	창원(7.12), 진주(7.13)
제주	98	0	0	
합계	8,207	18	2,300	

교육 참석희망자 조사

- 축산물 인증농가 : 해당교육시작 7일 전까지 교육 참석희망자 명단 협회로 제출

* 별도의 지정서식 적용

세부 교육 계획

- 교육 일정 및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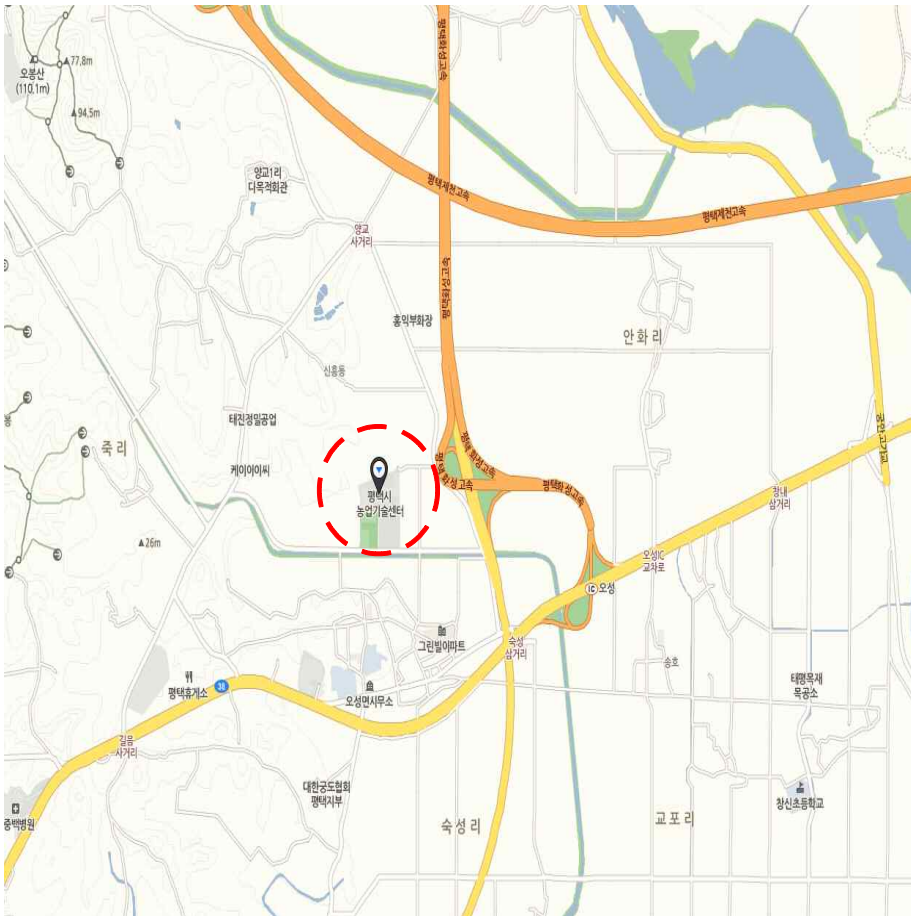
지역		계획인원	교육일자	세부장소 (*약도 하단첨부)	전화번호
경기	평택	170	6/19	평택농업기술센터 2층 대강당	031-8024-4521
	포천	170	6/21	포천농업기술센터 대강당	031-538-3863
	이천	180	6/22	이천농업기술센터 본관 2층 대회의실	031-644-4113
계		520			
강원	춘천	80	6/20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BIO-2동 1층 세미나실	033-258-6932
	평창	80	6/27	평창농업기술센터 본관 2층 대회의실	033-330-1332
계		160			
충북	청주	90	6/28	오창 충북농업기술원 농심관	043-220-5734
	충주	90	6/29	충주농업기술센터 2층 대강당	043-850-3566
계		180			
충남	대전	100	7/3	기독교연합봉사회관 컨벤션홀	042-254-2323
	아산	100	7/4	아산농업기술센터 지식농업관	041-537-3809
계		200			

전북	전주	120	7/5	전북생물산업진흥원 대회의실	063-210-6514
	정읍	120	7/6	정읍농업기술센터 본관3층 제1강의실	063-539-6143
계		240			
경북	대구	140	7/10	대구청소년수련원 세미나II	053-656-6655
	안동	130	7/11	안동시청소년 수련관 2층 다목적집회장	054-850-4620
계		440			
경남	창원	120	7/12	창원축구센터 관리동 2층 중세미나실	055-210-8026
	진주	110	7/13	진주농업기술센터 3층 농업교육관	055-749-6133
계		330			
전남	순천	170	7/20	순천문화예술회관 소극장	061-749-8624
	광주	160	7/25	광주 일.가정양립지원본부 3층 다목적실	062-613-7976
	강진	170	7/26	강진 아트홀 소극장	061-430-3972
계		710			
총계		2,300			

* 교육참석 농업인에게는 기념품 및 문구 제공

경기 평택 : 평택 농업기술센터 2층 대강당**2018.6.19 13:00~16:30**

○ 주 소 : 경기 평택시 오성면 청오로 33-58

**경기 포천 : 포천 농업기술센터 대강당****2018.6.21 13:00~16:30**

○ 주 소 :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들못이길 11-88



경기 이천 : 이천 농업기술센터 본관2층 대회의실

2018.6.22 13:00~16:30

○ 주 소 : 경기도 이천시 부악로 38-52



강원 춘천 :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BIO-2동 1층 세미나실

2018.6.20 13:00~16:30

○ 주 소 : 강원도 춘천시 소양강로 32



강원 평창 : 평창농업기술센터 본관 2층 대회의실

2018.6.27 13:00~16:30

○ 주 소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여만길 46



충북 청주 오창 : 충북농업기술원 농심관

2018.6.28 13:00~16: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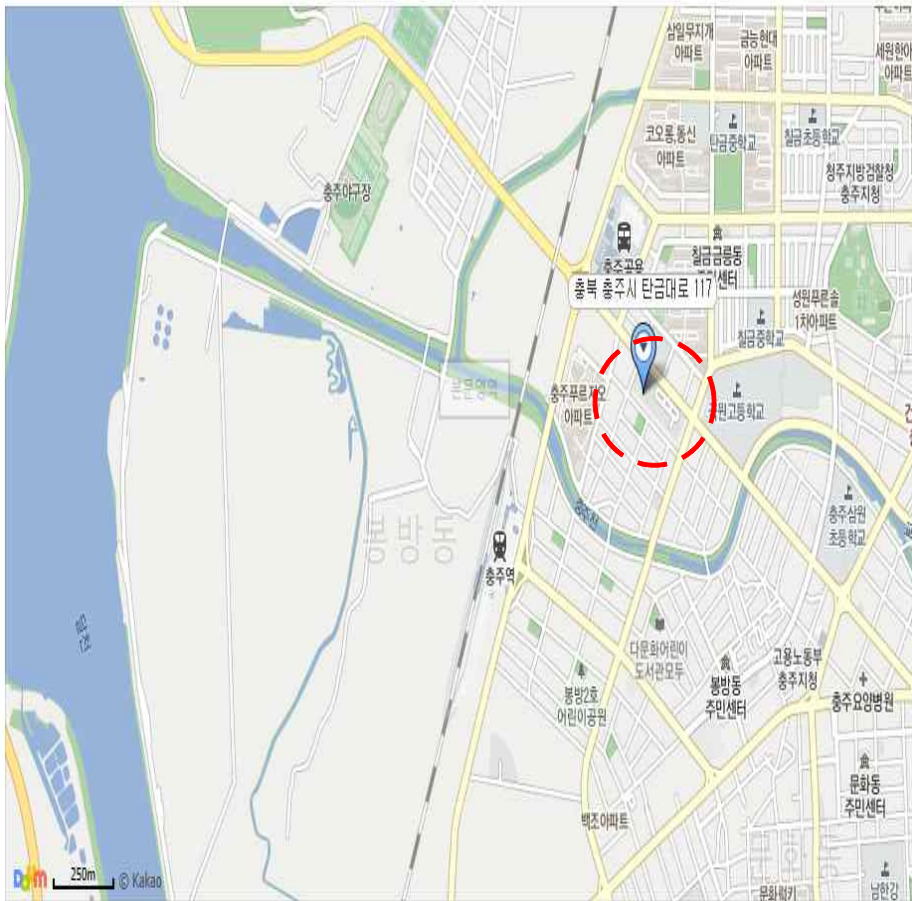
○ 주 소 : 충북 청주시 오창읍 가곡길 46



충북 충주 : 충주 농업기술센터 2층 대강당

2018.6.28. 13:00~16:30

○ 주 소 : 충북 충주시 탄금대로 117



대전광역시 : 대전 기독교연합봉사회관 컨벤션홀

2018.7.3 13:00~16: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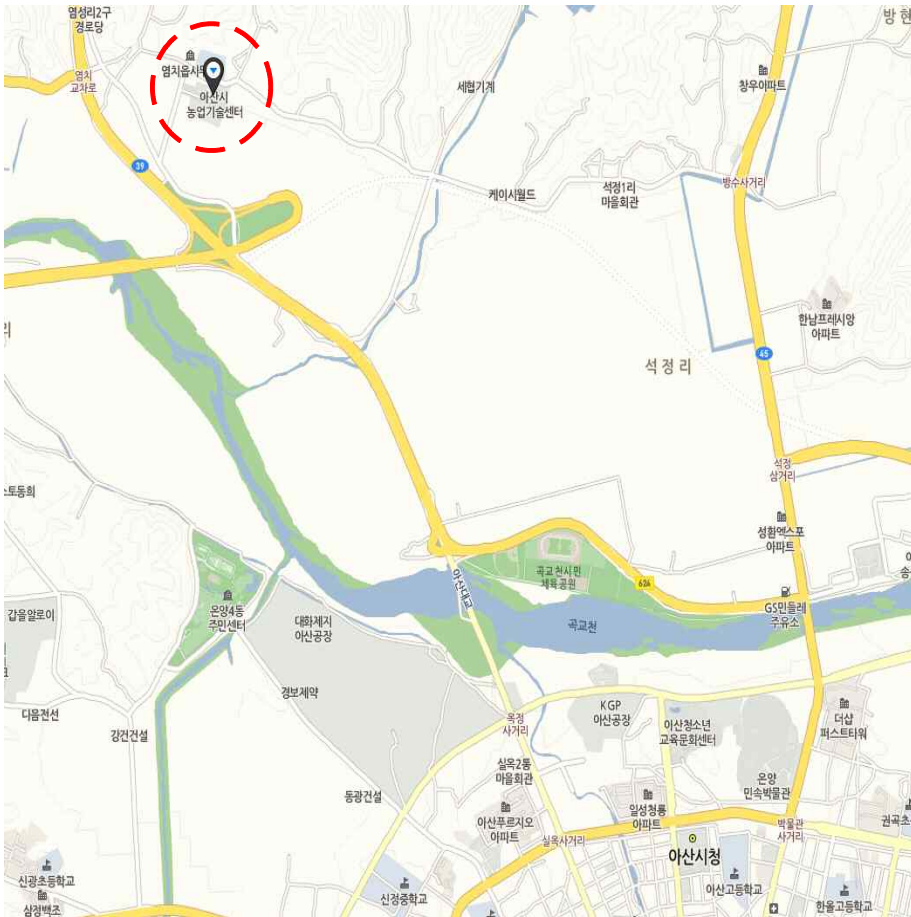
○ 주 소 : 대전시 중구 계백로 1712



충남 아산 : 아산 농업기술센터 지식농업관

2018.7.4 13:00~16: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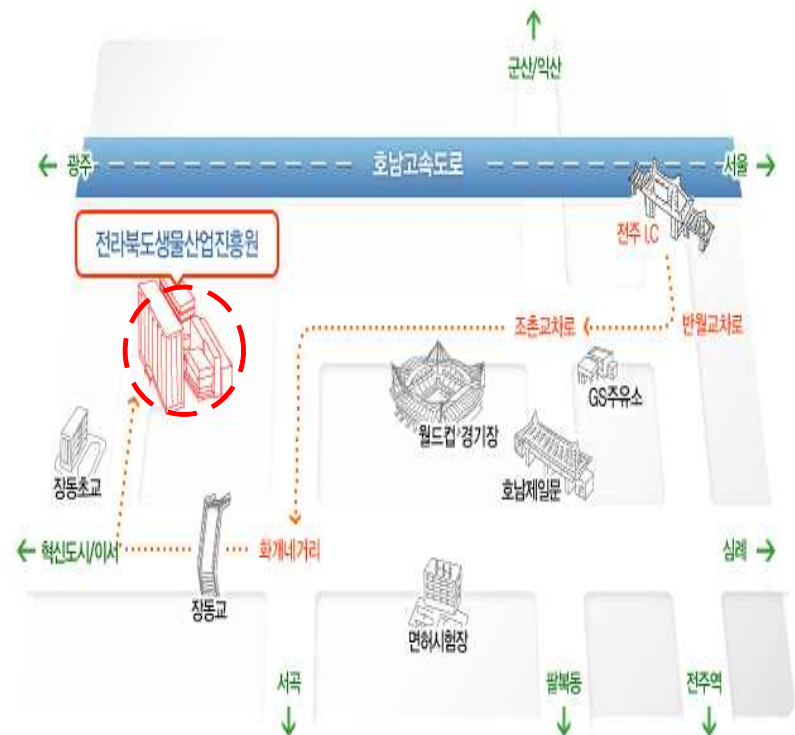
○ 주 소 : 충남 아산시 염치읍 염성길 70-30



전북 전주 : 전북생물산업진흥원 대회의실

2018.7.5 13:00~16:30

○ 주 소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원장동길 111-18



전북 정읍 : 정읍 농업기술센터 본관3층 제1강의실

2018.7.6 13:00~16: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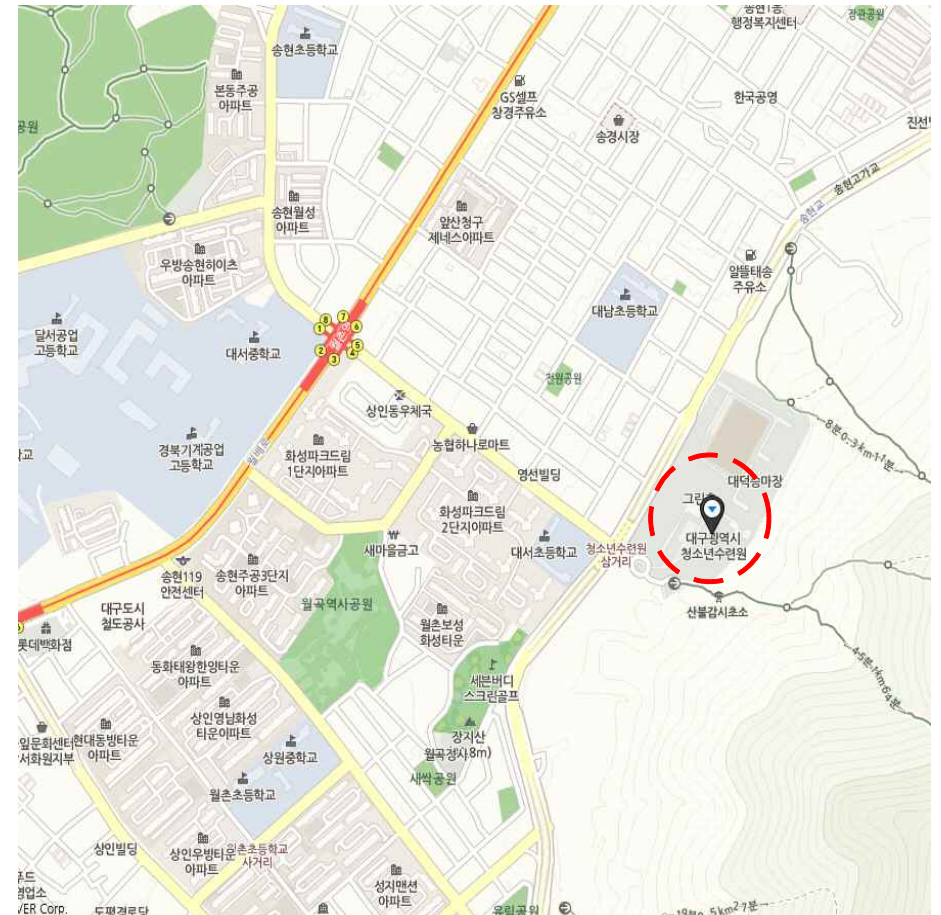
○ 주 소 : 전북 정읍시 정우면 정우남로 282



대구광역시 : 대구 청소년수련원 세미나II

2018.7.10 13:00~16:30

○ 주 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앞산순환로 180 청소년수련원



경북 안동 : 안동 청소년수련관 2층 다목적집회장

2018.7.11 13:00~16:30

○ 주 소 : 경상북도 안동시 축제장길 42 청소년수련관



경남 : 창원시 창원축구센터관리동 2층 중세미나실

2018.7.12. 13:00~16:30

○ 주 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비읍로 97



경남 : 진주시 농업기술센터 3층 농업교육관

2018.7.13. 13:00~16:30

○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689
진주농산물도매시장 3층



전남 순천 : 순천문화예술회관 소극장

2018.7.20 13:00~16:30

○ 주 소 : 전남 순천시 삼산로 16



광주 : 광주 일가정양립지원본부 3층 다목적실

2018.7.25 13:00~16:30

○ 주 소 : 광주광역시 상무자유로 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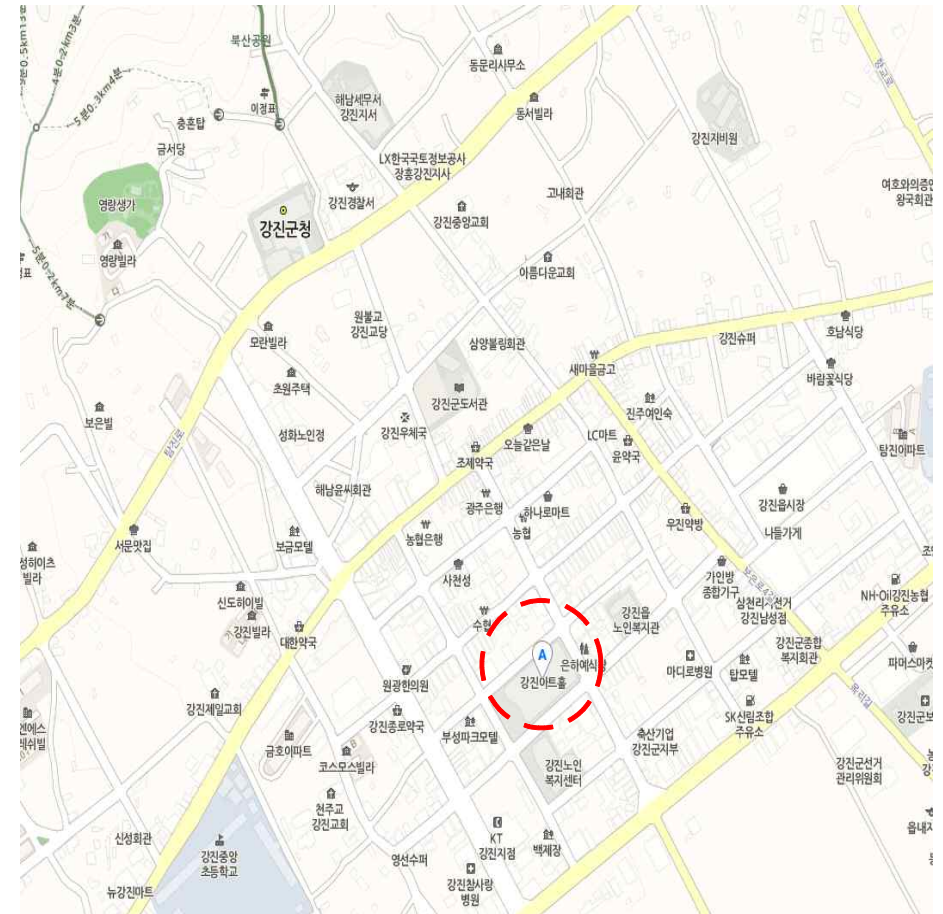


주소 : 「61953」 광주광역시 상무자유로73(치평동 1162)

전남 강진 : 강진 아트홀 소극장

2018.7.26 13:00~16:30

○ 주 소 : 전남 강진군 강진읍 영랑로1길 9 강진아트홀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 축산물 인증기준(농관원 고시)

유기축산물	
심사 사항	구비 요건
가. 일반원칙 및 단체관리	1) 규칙 별표 4 제1호나목에 따른 경영관련 자료의 기록·보관 기간은 최근 1년 이상으로 한다. 다만, 과거에 인증 경력이 없는 신규 신청 사업자의 경우에는 마목1)의 축종별 전환기간 동안으로 단축할 수 있다. 2) 1)의 경영관련 자료와 축산물의 생산과정 등을 기록한 인증품 생산계획서 및 필요한 관련정보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심사 등을 위하여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공하여야 한다. 3) 사육하고 있는 축산물 중 일부만을 인증 받으려고 하는 경우 인증을 신청하지 않은 축산물의 사육과정에서 사용한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약품외품의 사용량과 해당축산물의 생산량 및 출하처별 판매량(병행생산에 한함)에 관한 자료를 기록·보관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4) 초식가축은 목초지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밖의 가축은 기후와 토양이 허용되는 한 노천구역에서 자유롭게 방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가축 사육두수는 해당 농가에서의 유기사료 확보능력, 가축의 건강, 영양균형 및 환경영향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정하여야 한다. 6) 가축의 생리적 요구에 필요한 적절한 사양관리체제로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면서 질병예방과 건강유지를 위한 가축관리를 하여야 한다. 7) 가축 질병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축의 건강과 복지유지를 위하여 수의사의 처방 및 감독 하에 치료용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다. 8)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심사를 위하여 축산물

	의 생산과정 등을 기록한 인증품 생산계획서와 필요한 관련 정보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9) 생산자단체로 인증 받으려는 경우에는 인증신청서를 제출하기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이행하고 관련 증명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가) 소속 농가에게 인증기준에 적합하게 작성된 생산지침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소속 농가에게 최신의 인증기준과 인증농가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해 교육하여야 한다. 다) 소속 농가의 인증품 생산과정이 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심사한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라) 가)부터 다)까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생산관리자를 1명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10) 9)의 라)에 의한 생산관리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4시간 이상의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2년 1회)을 수료한 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11) 생산관리자는 신규 단체로 인증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정하되 9)다)의 예비심사는 인증갱신 시부터 적용되며, 생산관리자의 인증취소, 경영이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 지정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새로운 생산관리자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11)에 정한 생산관리자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의 이수 기한은 교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나. 사육장 및 사육조건	1) 사육장 및 사료작물 재배지는 주변으로부터의 오염우려가 없는 지역으로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1지역의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축사 및 방목에 대한 세부요건은 다음과 같다. 가) 축사 조건 (1) 축사는 다음과 같이 가축의 생물적 및 행동적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가) 사료와 음수는 접근이 용이할 것 (나) 공기순환, 온도·습도, 먼지 및 가스농도가 가축건강에 유해하지

아니한 수준 이내로 유지되어야 하고, 건축물은 적절한 단열·환기시설을 갖출 것

(다) 충분한 자연환기와 햇빛이 제공될 수 있을 것

(2) 축사의 밀도조건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3)에 정하는 축종별 면적당 사육두수를 유지하여야 한다.

(가) 가축의 품종·계통 및 연령을 고려하여 편안함과 복지를 제공할 수 있을 것

(나) 축군의 크기와 성에 관한 가축의 행동적 욕구를 고려할 것

(다) 자연스럽게 일어서서 앉고 돌고 활개 칠 수 있는 등 충분한 활동공간이 확보될 것

(3) 유기가축 1마리당 갖추어야 하는 가축사육시설의 소요면적(단위:㎡)은 다음과 같다.

(가) 한·육우

시설형태	번식우	비육우	송아지
방사식	10㎡/마리	7.1㎡/마리	2.5㎡/마리

① 성우 1마리=육성우 2마리

② 성우(14개월령 이상), 육성우(6개월~14개월 미만), 송아지(6개월령 미만)

③ 포유중인 송아지는 마리수에서 제외

(나) 젖소 (㎡/마리)

시설형태	경산우		초임우 (13~24월령)	육성우 (7~12월령)	송아지 (3~6월령)
	착유우	건유우			
깔짚	17.3	17.3	10.9	6.4	4.3
프리스톨	9.5	9.5	8.3	6.4	4.3

(다) 돼지 (㎡/마리)

구분	용돈	번식돈				비육돈			
		임신돈	분만돈	종부대기돈	후보돈	자돈		육성돈	비육돈
						초기	후기		
소요면적	10.4	3.1	4.0	3.1	3.1	0.2	0.3	1.0	1.5

① 자돈초기(20kg 미만), 자돈중기(20~30kg 미만), 육성돈(30~60kg

미만), 비육돈(60kg 이상) ② 포유중인 자돈은 마리수에서 제외 (라) 닭 <table> <tr> <th>구분</th><th>소요면적</th></tr> <tr> <td>산란 성계, 종계</td><td>0.22㎡/마리</td></tr> <tr> <td>산란 육성계</td><td>0.16㎡/마리</td></tr> <tr> <td>육계</td><td>0.1㎡/마리</td></tr> </table> ① 성계 1마리 = 육성계 2마리 = 병아리 4마리 ② 병아리(3주령 미만), 육성계(3주령~18주령 미만), 성계(18주령 이상) (마) 오리 <table> <tr> <th>구분</th><th>소요면적</th></tr> <tr> <td>산란용 오리</td><td>0.55㎡/마리</td></tr> <tr> <td>육용 오리</td><td>0.3㎡/마리</td></tr> </table> ① 성오리1마리 = 육성오리2마리 = 새끼오리4마리 ② 산란용: 성오리(18주령 이상), 육성오리(3주령~18주령 미만), 새끼오리(3주령 미만) ③ 육용오리: 성오리(6주령 이상), 육성오리 : 3주령~6주령 미만, 새끼오리 : 3주령 미만 (바) 양 <table> <tr> <th>구분</th><th>소요면적</th></tr> <tr> <td>면양, 산양</td><td>1.3㎡/마리</td></tr> </table> (사) 사슴 <table> <tr> <th>구분</th><th>소요면적</th></tr> <tr> <td>꽃사슴</td><td>2.3㎡/마리</td></tr> <tr> <td>레드디어</td><td>4.6㎡/마리</td></tr> <tr> <td>엘크</td><td>9.2㎡/마리</td></tr> </table> (4) 축사·농기계 및 기구 등은 청결하게 유지하고 소독함으로써 교차감염과 질병감염체의 증식을 억제하여야 한다. (5) 축사의 바닥은 부드러운면서도 미끄럽지 아니하고, 청결 및 건조하여야 하며, 충분한 휴식공간을 확보하여야 하고, 휴식공간에서는 건조깔짚을 깔아 줄 것	구분	소요면적	산란 성계, 종계	0.22㎡/마리	산란 육성계	0.16㎡/마리	육계	0.1㎡/마리	구분	소요면적	산란용 오리	0.55㎡/마리	육용 오리	0.3㎡/마리	구분	소요면적	면양, 산양	1.3㎡/마리	구분	소요면적	꽃사슴	2.3㎡/마리	레드디어	4.6㎡/마리	엘크	9.2㎡/마리	
구분	소요면적																										
산란 성계, 종계	0.22㎡/마리																										
산란 육성계	0.16㎡/마리																										
육계	0.1㎡/마리																										
구분	소요면적																										
산란용 오리	0.55㎡/마리																										
육용 오리	0.3㎡/마리																										
구분	소요면적																										
면양, 산양	1.3㎡/마리																										
구분	소요면적																										
꽃사슴	2.3㎡/마리																										
레드디어	4.6㎡/마리																										
엘크	9.2㎡/마리																										

	(6) 번식돈은 임신 말기 또는 포유기간을 제외하고는 군사를 하여야 하고, 자돈 및 육성돈은 케이지에서 사육하지 아니할 것. 다만, 자돈 압사 방지를 위하여 포유기간에는 모돈과 조기 이유한 자돈의 생체중이 25킬로그램까지는 케이지에서 사육할 수 있다. (7) 가금류의 축사는 짚·톱밥·모래 또는 야초와 같은 깔짚으로 채워진 건축공간이 제공되어야 하고, 가금의 크기와 수에 적합한 해의 크기 및 높은 수면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산란계는 산란상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8) 산란계의 경우 자연일조시간을 포함하여 총 14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공광으로 일조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나) 방목조건 (1) 포유동물의 경우에는 가축의 생리적조건·기후조건 및 지면조건이 허용하는 한 언제든지 방목지 또는 운동장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수소의 방목지 접근, 암소의 겨울철 운동장 접근 및 비육 말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반추가축은 축종별 생리 상태를 고려하여 가)(3)의 축사면적 2배 이상의 방목지 또는 운동장을 확보해야 한다. 다만, 충분한 자연환기와 햇빛이 제공되는 축사구조의 경우 축사시설면적의 2배 이상을 축사 내에 추가 확보하여 방목지 또는 운동장을 대신할 수 있다. (3) 가금류의 경우에는 다음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가금은 개방조건에서 사육되어야 하고, 기후조건이 허용하는 한 야외 방목장에 접근이 가능하여야 하며, 케이지에서 사육하지 아니할 것 (나) 물오리류는 기후조건에 따라 가능한 시냇물·연못 또는 호수에 접근이 가능할 것 3) 유기합성농약 또는 유기합성농약 성분이 함유된 동물용의약외품 등의 자재는 축사 및 축사의 주변에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같은 축사 내에서 유기가축과 비유기가축을 번갈아 사육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유기가축과 비유기가축의 병행사육 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

	가) 유기가축과 비유기가축은 서로 독립된 축사(건축물)에서 사육하고 구별이 가능하도록 각 축사 입구에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입식시기가 경과한 비유기 가축을 유기가축 축사로 입식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유기가축과 비유기가축의 생산부터 출하까지 구분관리 계획을 마련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라) 유기가축, 사료취급,약품투여 등은 비유기가축과 구분하여 정확히 기록 관리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마) 인증가축은 비유기 가축사료, 금지물질 저장, 사료공급·혼합 및 취급 지역에서 안전하게 격리되어야 한다.
다. 자급 사료 기반	1) 조식가축의 경우에는 가축 1마리당 목초지 또는 사료작물 재배지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료작물 재배지는 담리작 재배 및 임차·계약재배가 가능하다. 가) 한·육우 : 목초지 2,475㎡ 또는 사료작물재배지 825㎡ 나) 젖소 : 목초지 3,960㎡ 또는 사료작물재배지 1,320㎡ 다) 면·산양 : 목초지 198㎡ 또는 사료작물재배지 66㎡ 라) 사슴 : 목초지 660㎡ 또는 사료작물재배지 220㎡ 다만, 축종별 가축의 생리적 상태, 지역 기상조건의 특수성 및 토양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외부에서 유기적으로 생산된 조사료를 도입할 경우, 목초지 또는 사료작물재배지 면적을 일부 감할 수 있다. 이 경우 한·육우는 374㎡/마리, 젖소는 916㎡/마리 이상의 목초지 또는 사료작물재배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은 축종별 가축의 생리적 상태, 지역 기상조건의 특수성 및 토양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유기적으로 재배·생산된 조사료를 구입하여 급여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 3) 목초지 및 사료작물 재배지는 유기농산물의 재배·생산기준에 맞게 생산하여야 한다. 다만, 멸강충 등 긴급 병충해 방제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의 사전승인 또는 사후보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가축분뇨 퇴·액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완전히 부숙시켜서 사용하여야 하며, 이의 과다한 사용, 유실 및 용탈 등으로 인하여 환경오염을 유발

	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산림 등 자연상태에서 자생하는 사료작물은 유기농산물 허용물질 외의 물질이 3년 이상 사용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고, 비식용유기가공품(유기사료)의 기준을 충족할 경우 유기사료작물로 인정할 수 있다.			
라. 가축의 선택, 번식 방법 및 입식	1) 가축은 유기축산 농가의 여건 및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사육하기 적합한 품종 및 혈통을 골라야 한다. 가) 산간지역·평야지역 및 해안지역 등 지역적인 조건에 적합할 것 나) 축종별로 주요 가축전염병에 감염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특정 품종 및 계통에서 발견되는 스트레스증후군 및 습관성 유산 등의 건강상 문제점이 없을 것 다) 품종별 특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내병성이 있을 것 2) 교배는 종축을 사용한 자연교배를 권장하되, 인공수정을 허용할 수 있다. 3) 수정란 이식기법이나 번식호르몬 처리, 유전공학을 이용한 번식기법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4) 다른 농장에서 가축을 입식하려는 경우 해당 가축의 입식조건(입식시기 등)이 유기축산의 기준에 맞게 사육된 가축이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자료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유기가축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일반 가축을 입식할 수 있다. 가) 이유 직후 또는 부화 직후의 가축인 경우(원유 생산용·알 생산용 가축의 경우 육성축 및 성축 입식 가능) 나) 번식용 수컷이 필요한 경우 다)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폐사로 새로운 가축을 입식하려는 경우 라) 마목 1)의 최소 사육기간 이상의 최근 인증경력이 없는 농장 또는 사업자가 인증신청 당시 사육하고 있는 일반가축의 육성축 및 성축			
마. 전환기간	1) 일반농가가 유기축산으로 전환하거나 라목4) 단서에 따라 유기가축이 아닌 가축을 유기농장으로 입식하여 유기축산물을 생산·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아래의 전환기간 이상을 유기축산물 인증기준에 따라 사육하여야 한다.			
	<table><tr><td>축종</td><td>생산물</td><td>최소 사육기간</td></tr></table>	축종	생산물	최소 사육기간
축종	생산물	최소 사육기간		

	한우·육우	식육	입식 후 출하 시까지(최소 12개월)
	젖소	식육	착유우는 90일, 새끼를 낳지 않은 암소는 6개월
	산양	식육	입식 후 출하 시까지(최소 5개월)
		식육	착유양은 90일, 새끼를 낳지 않은 암양은 6개월
	돼지	식육	입식 후 출하 시까지(최소 5개월)
	육계	식육	입식 후 출하 시까지(최소 3주)
	산란계	알	입식 후 3개월
	오리	식육	입식 후 출하 시까지(최소 6주)
		알	입식 후 3개월
	메추리	알	입식 후 3개월
	사슴	식육	입식 후 출하 시까지(최소 12개월)
	2) 전환기간은 인증기관의 감독이 시작된 시점부터 기산하며, 방목지·노천구역 및 운동장 등의 사육여건이 잘 갖추어지고 유기 사료의 급여가 100퍼센트 가능하여 유기축산물 인증기준에 맞게 사육한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인정되는 경우 1)의 전환기간 2/3 범위 내에서 유기 사육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3) 전환기간의 시작일은 사육형태에 따라 가축 개체별 또는 개체군별 또는 축사별로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4) 전환기간이 충족되지 아니한 가축을 인증품으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5) 1)에 전환기간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축종은 해당 축종과 생육기간 및 사육방법이 비슷한 축종의 전환기간을 적용한다. 다만, 생육기간 및 사육방법이 비슷한 축종을 적용할 수 없을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별도 전환기간을 설정한다. 6) 동일 농장에서 가축·목초지 및 사료작물재배지가 동시에 전환 하는 경우에는 현재 사육되고 있는 가축에게 자체농장에서 생산된 사료를 급여하는 조건 하에서 목초지 및 사료작물 재배지의 전환기간은 1년으로 한다.		
바. 사료 및 영양 관리	1) 유기축산물의 생산을 위한 가축에게는 100퍼센트 비식용유기가공품(유기사료)을 급여하여야 하며, 유기사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유기축산물 생산과정 중 심각한 천재·지변, 극한 기후조건 등으로 인하여 1)에 따른 사료급여가 어려운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은 일정기간 동안 유기사료가 아닌 사료를 일정 비율로 급여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3) 반추가축에게 사일리지(silage)만 급여해서는 아니 되며, 생초나 건초 등 조사료도 급여하여야 한다. 또한 비반추 가축에게도 가능한 조사료(粗飼料) 급여를 권장한다. 4) 유전자변형농산물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로부터 유래한 것이 함유되지 아니하여야 하나, 비의도적인 혼입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요령 제8조제1호에 따라 유전자변형농산물로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함량의 1/10 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전자변형농산물이 아닌 농산물을 구분 관리하였다’는 구분유통증명서류·정부증명서 또는 검사성적서를 갖추어야 한다. 5) 유기배합사료 제조용 단미사료 및 보조사료는 규칙 별표 1 제1호나목의 자재에 한해 사용하되 사용가능한 자재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6) 다음에 해당되는 물질을 사료에 첨가해서는 아니 된다. 가) 가축의 대사기능 촉진을 위한 합성화합물 나) 반추가축에게 포유동물에서 유래한 사료(우유 및 유제품을 제외)는 어떠한 경우에도 첨가해서는 아니 된다. 다) 합성질소 또는 비단백태질소화합물 라) 항생제·합성항균제·성장촉진제, 구충제, 항콕시듐제 및 호르몬제 마) 그 밖에 인위적인 합성 및 유전자조작에 의해 제조·변형된 물질 7)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른 생활용수 수질기준에 적합한 신선한 음수를 상시 급여할 수 있어야 한다.
사. 동물복지 및 질병 관리	1) 가축의 질병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통하여 예방하여야 하며, 질병이 없는데도 동물용의약품을 투여해서는 아니 된다. 가) 가축의 품종과 계통의 적절한 선택 나) 질병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육장 위생관리 다) 생균제(효소제 포함), 비타민 및 무기물 급여를 통한 면역기능 증진 라) 지역적으로 발생되는 질병이나 기생충에 저항력이 있는 종 또는 품

	종의 선택 2) 다음에 해당하는 동물용의약품의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가) 가축의 기생충 감염 예방을 위하여 구충제 사용과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예방백신의 사용 나) 면역기능 증진을 위한 1)다)의 물질로 제조된 약품의 사용 3) 법정전염병의 발생이 우려되거나 긴급한 방역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동물용의약품을 주사 또는 투약 등의 필요한 질병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증명서를 비치하거나 관련 고시를 기재하여야 한다. 4) 1)부터 2)까지에 따른 예방관리에도 불구하고 질병이 발생한 경우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수의사 처방에 의해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하여 질병을 치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처방전을 농장 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5) 4)에 따라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한 가축은 마목1)의 전환기간(해당 약품의 휴약기간 2배가 전환기간보다 더 긴 경우 휴약기간의 2배 기간을 적용)이 지나야 유기축산물로 출하할 수 있다. 다만, 2)·3)에 따라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한 가축은 휴약기간의 2배를 준수하여 유기축산물로 출하할 수 있다. 6) 약초 및 천연물질을 이용하여 치료를 할 수 있다. 7) 생산성 촉진을 위해서 성장촉진제 및 호르몬제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의사의 처방에 따라 치료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경우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한 처방전을 농장 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8) 가축에 있어 꼬리 부분에 접착밴드 붙이기, 꼬리 자르기, 이빨 자르기, 부리 자르기 및 뿔 자르기와 같은 행위는 일반적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안전 또는 축산물 생산을 목적으로 하거나 가축의 건강과 복지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이를 할 수 있다. 9) 생산물의 품질향상과 전통적인 생산방법의 유지를 위하여 물리적 거세를 할 수 있다. 10) 동물용의약품이나 동물용의약외품을 사용하는 경우 용법, 용량, 주의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입 및 사용내역 등에 대하여 기록·관
--	--

	리하여야 한다. 다만, 유기합성농약 성분이 함유된 물질은 사용할 수 없다.
아. 운송·도 축·가공과 정의 품질 관리	1) 생축의 수송은 조용하고 상처나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전기 자극이나 대중요법의 안정제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2) 유기축산물의 수송, 도축, 가공과정의 품질관리를 위해 다음 사항이 포함된 품질관리 계획을 세워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가) 수송방법, 도축방법, 가공방법, 인증품 표시방법 나) 인증을 받지 않은 축산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는 구분 관리 방법 3) 가축의 도축은 스트레스와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오염방지 등을 위해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을 적용하는 도축장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4) 도체 및 원유 등 해당 축산물은 가공공정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적용(농가에서 직접 가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는 축산물 가공장에서 가공되어야 하고, 유기적 방법으로 생산된 원유는 별도 구분하여 집유 및 가공처리를 하여야 한다. 5) 생축의 저장 및 수송 시에는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외부로부터의 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6) 유기축산물로 출하되는 축산물에 동물용의약품이 잔류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목2)·3)·4)에 따라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한 경우 이를 허용하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공전의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의 10분의 1 이하여야 한다. 7) 유통 시 발생할 수 있는 유기축산물의 변성이나 부패방지를 위하여 임의로 합성물질을 첨가할 수 없다. 다만, 물리적 처리나 천연제제는 유기축산물의 화학적 변성이나 특성을 변화시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다. 8) 유기축산물 포장재는 「식품위생법」의 관련 규정에 적합하고 가급적 생물 분해성, 재생품 또는 재생이 가능한 자재를 사용하여 제작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9) 인증품 출하 시 인증품의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며, 포장재의 제작 및 사용량에 관한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10) 인증표시를 하지 않은 축산물을 인증품으로 판매할 수 없다. 다만, 2)의 품질관리 계획에 따라 계약된 유통자에게 생축으로 판매하는 경

	우 납품서, 거래명세서 또는 보증서 등에 표시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동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자. 가축분뇨 의 처리	1) 가축사육 시 발생하는 가축분뇨는 완전히 부숙시킨 퇴비 또는 액비로 자원화하여 초지나 농경지에 환원함으로써 토양 및 식물과의 유기적 순환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2) 가축의 운동장에서는 가축의 분뇨가 외부로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청결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같은 법 제11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 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사육시설이 동 법령의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가축분뇨 퇴·액비는 표면수 오염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수준으로 사용하되, 장마철에는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차. 기타	1) 규칙 및 이 고시에서 정한 유기축산물의 인증기준은 인증 유효기간동안 상시적으로 준수하여야 한다. 2) 규칙 및 이 고시에서 정한 유기축산물의 인증기준을 준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무항생제축산물	
심사 사항	구비요건
가. 경영관리 및 단체 관리	1) 규칙 별표 4 제1호나목에 따른 경영관련 자료의 기록·보관 기간은 최근 1년 이상으로 한다. 다만, 과거에 인증경력이 없는 신규 신청 사업자의 경우에는 인증 신청 시부터 기록할 수 있다. 2) 1)의 경영관련 자료와 축산물의 생산과정 등을 기록한 인증품 생산계획서 및 필요한 관련정보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심사 등을 위하여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공하여야 한다. 3) 사육하고 있는 축산물 중 일부만을 인증 받으려고 하는 경우 인증신청하지 않은 축산물의 사육과정에서 사용한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약품외품의 사용량과 해당축산물의 생산량 및 출하처별 판매량(병행생산에 한함)에 관한 자료를 기록·보관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 장이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4) 생산자단체로 인증 받으려는 경우에는 인증신청서를 제출하기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이행하고 관련 증명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가) 소속 농가에게 인증기준에 적합하게 작성된 생산지침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소속 농가에게 최신의 인증기준과 인증농가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해 교육하여야 한다. 다) 소속 농가의 인증품 생산과정이 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심사한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라) 가)부터 다)까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생산관리자를 1명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5) 4)의 라)에 의한 생산관리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4시간 이상의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2년 1회)을 수료한 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6) 생산관리자는 신규 단체로 인증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정하되 4)다)의 예비심사는 인증갱신 시부터 적용되며, 생산관리자의 인증취소, 경영이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 지정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새로운 생산관리자를 지정하여 운영하여

	야 한다. 이 경우 5)에 정한 생산관리자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의 이수기한은 교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나. 축사 및 사육 조건	1) 축사 조건 가) 축사는 다음과 같이 가축의 생물적 및 행동적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1) 사료와 음수는 접근이 용이할 것 (2) 공기순환, 온도·습도, 먼지 및 가스 농도가 가축건강에 유해하지 아니한 수준 이내로 유지되어야 하고, 건축물은 적절한 단열·환기시설을 갖출 것 나) 축사의 밀도 조건은 「축산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에서 정한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사육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양과 사슴은 유기축산물의 축사밀도를 따르고 산란용 메추리는 다음기준에 따른다. <table border="1"> <tr> <th>구분</th><th>소요면적</th></tr> <tr> <td>산란용 메추리</td><td>0.0076㎡/마리</td></tr> </table> 다) 축사·농기계 및 기구 등은 청결하게 유지하고 소독함으로써 질병 감염체의 증식을 억제하여야 한다. 라) 축사의 바닥과 깔짚은 청결 및 건조하여야 하며, 충분한 휴식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유기합성농약 또는 유기합성농약 성분이 함유된 동물용의약품 등의 자재는 축사 및 축사의 주변에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같은 축사에서 무항생제 가축과 일반가축을 번갈아 사육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무항생제 사육 가축과 일반가축의 병행 생산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허용할 수 있다. 가) 무항생제 가축과 일반가축은 서로 독립된 축사(건축물)에서 사육하고 구별이 가능하도록 각 축사 입구에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입식시기가 경과한 일반가축을 무항생제 가축 축사로 입식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무항생제 가축과 일반가축에 대하여 생산부터 출하까지 구분관리 계획을 세우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라) 무항생제 사육 가축, 사료 취급, 약품 투여 등은 일반가축과 구분하여 정확히 기록을 관리·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구분	소요면적	산란용 메추리	0.0076㎡/마리
구분	소요면적				
산란용 메추리	0.0076㎡/마리				

	마) 무항생제 사육 가축은 일반 가축사료, 금지물질 저장, 사료 공급·혼합 및 취급지역에서 안전하게 격리되어야 하며 사육장 입구 등의 잘 보이는 곳에 무항생제 축산물 사육장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가축의 입식 및 번식방법	1) 교배는 종축을 사용한 자연교배를 권장한다. 2) 인공수정 및 수정란 이식기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번식호르몬 처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3) 다른 농장에서 가축을 입식하려는 경우 해당 가축의 입식조건(입식시기 등)이 무항생제축산물의 기준에 맞게 사육된 가축이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자료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무항생제 가축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일반 가축을 입식할 수 있다. 가) 이유 직후 또는 부화 직후의 가축인 경우(원유 생산용, 알 생산용 가축의 경우 육성축 및 성축 입식 가능) 나) 번식용 수컷이 필요한 경우 다)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폐사로 새로운 가축을 입식하려는 경우 라) 라목1)의 최소 사육기간 이상의 최근 인증경력이 없는 농장 또는 사업자가 인증신청 당시 사육하고 있는 일반가축의 육성축 및 성축																							
라. 전환기간	1) 일반농가가 무항생제축산으로 전환하거나 다목3)의 단서에 따라 무항생제가축이 아닌 가축을 무항생제농장에 입식하여 무항생제축산물을 생산·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아래의 전환기간 이상을 무항생제축산물 인증기준에 따라 사육하여야 한다. <table><tr><th>축종</th><th>생산물</th><th>전환기간</th></tr><tr><td>한우·육우</td><td>식육</td><td>입식 후 출하 시까지(최소 12개월)</td></tr><tr><td>젖소</td><td>시유</td><td>착유우는 90일, 새끼를 낳지 않은 암소는 6개월</td></tr><tr><td rowspan="2">산양</td><td>식육</td><td>입식 후 출하 시까지(최소 5개월)</td></tr><tr><td>시유</td><td>착유양은 90일, 새끼를 낳지 않은 암양은 6개월</td></tr><tr><td>돼지</td><td>식육</td><td>입식 후 출하 시까지(최소 5개월)</td></tr><tr><td>육계</td><td>식육</td><td>입식 후 출하 시까지(최소 3주)</td></tr><tr><td>산란계</td><td>알</td><td>입식 후 3개월</td></tr></table>	축종	생산물	전환기간	한우·육우	식육	입식 후 출하 시까지(최소 12개월)	젖소	시유	착유우는 90일, 새끼를 낳지 않은 암소는 6개월	산양	식육	입식 후 출하 시까지(최소 5개월)	시유	착유양은 90일, 새끼를 낳지 않은 암양은 6개월	돼지	식육	입식 후 출하 시까지(최소 5개월)	육계	식육	입식 후 출하 시까지(최소 3주)	산란계	알	입식 후 3개월
축종	생산물	전환기간																						
한우·육우	식육	입식 후 출하 시까지(최소 12개월)																						
젖소	시유	착유우는 90일, 새끼를 낳지 않은 암소는 6개월																						
산양	식육	입식 후 출하 시까지(최소 5개월)																						
	시유	착유양은 90일, 새끼를 낳지 않은 암양은 6개월																						
돼지	식육	입식 후 출하 시까지(최소 5개월)																						
육계	식육	입식 후 출하 시까지(최소 3주)																						
산란계	알	입식 후 3개월																						

	오리	식육	입식 후 출하 시까지(최소 5주)
		알	입식 후 3개월
	메추리	알	입식 후 1개월
	사슴	식육	입식 후 출하 시까지(최소 12개월)
	2) 전환기간은 인증기관의 감독이 시작된 시점부터 인정된다. 다만,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무항생제 인증기준에 맞게 사육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환기간의 2/3 범위 내에서 무항생제 사육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3) 전환기간의 시작일은 사육형태에 따라 가축 개체별 또는 개체군별 또는 축사별로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4) 전환기간이 충족되지 아니한 가축을 인증품으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사료 및 영양관리	1) 가축에게 급여하는 사료는 항생제가 첨가되지 아니한 사료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한 후 급여하여야 한다.		
	2) 무항생제축산물 생산과정 중 심각한 천재지변, 극한 기후조건 등으로 인하여 1)에 따른 사료 급여가 어려운 경우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일정 기간 일반사료를 급여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3) 다음에 해당되는 물질을 사료에 첨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항생제·합성항균제·성장촉진제, 구충제, 항콕시들품 및 호르몬제 나) 반추가축에게 포유동물에서 유래한 사료(우유 및 유제품을 제외)는 어떠한 경우에도 첨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가축에게 합성착색제를 급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른 생활용수 수질기준에 적합한 신선한 음수를 상시 줄 수 있어야 한다.		
바. 동물복지 및 질병관리	1) 가축의 질병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통하여 예방하여야 하며, 질병이 없는데도 동물용의약품을 투여해서는 아니 된다. 가) 가축의 품종과 계통의 적절한 선택 나) 질병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육장 위생관리 다) 생균제(효소제 포함), 비타민, 무기물 등 급여를 통한 면역기능 증진		

- 2) 다음에 해당하는 동물용의약품의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 가) 가축의 기생충 감염 예방을 위하여 구충제 사용과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예방백신의 사용
- 나) 면역기능 증진을 위한 1)다)의 물질로 제조된 약품의 사용
- 3) 법정전염병의 발생이 우려되거나 긴급한 방역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동물용의약품을 주사 또는 투약 등의 필요한 질병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증명서를 비치하거나 관련 고시를 기재하여야 한다.
- 4) 1)부터 2)까지에 따른 예방관리에도 불구하고 질병이 발생한 경우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수의사 처방에 의해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하여 질병을 치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처방전을 농장 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 5) 4)에 따라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한 가축은 일반가축으로서 무항생제축산물로 출하할 수 없으며, 출하 시까지 무항생제가축에서 격리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2)·3)에 따라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한 경우와 아래의 질병 취약 시기에 질병이 발생하여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휴약기간의 2배의 기간이 경과한 후 무항생제축산물로 출하할 수 있다.

축종	생산물	질병 취약 시기
한우·육우	식육	분만, 거세(10개월령 이내), 출생 후 2개월 이내
젖소	시유	분만, 출생 후 2개월 이내
산양	식육	분만, 출생 후 1개월 이내(거세 포함)
	시유	분만, 출생 후 1개월 이내
돼지	식육	분만, 출생 후 1개월 이내(거세 포함)
육계	식육	부화 후 3주 이내 치료
산란계	알	부화 후 3주 이내 치료
오리	식육	부화 후 3주 이내 치료
	알	부화 후 3주 이내 치료
메추리	알	부화 후 1주 이내 치료

	사슴	식육	분만, 출생 후 1개월 이내(거세 포함)
	7) 약초 및 천연물질을 이용하여 치료를 할 수 있다. 8) 생산성 축진을 위해서 성장촉진제 및 호르몬제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의사의 처방에 따라 치료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경우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한 처방전을 농장 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9)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약외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법, 용량, 주의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입 및 사용내역 등에 대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유기합성농약 성분이 함유된 물질은 사용할 수 없다.		
사. 운송·도축·가공과정의 품질관리	1) 생축의 수송은 조용하고 상처나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무항생제 축산물의 수송, 도축, 가공과정의 품질관리를 위해 다음사항이 포함된 품질관리 계획을 세워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가) 수송방법, 도축방법, 가공방법, 인증품 표시방법 나) 인증을 받지 않은 축산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는 구분 관리 방법 3) 가축의 도축은 오염방지 등을 위해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적용하는 도축장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4) 도체 및 원유 등 해당 축산물은 가공공정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적용(농가에서 직접 가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는 축산물 가공장에서 가공되어야 하고, 일반적으로 생산된 원유와 별도 구분하여 집유 및 가공처리를 하여야 한다. 5) 생축의 저장 및 수송 시에는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외부로부터의 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6) 무항생제축산물로 출하되는 축산물에 동물용의약품이 잔류되어 있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바목5)의 단서에 따라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되 이 경우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공전의 동물용의약품의 잔류 허용기준의 10분의 1 이하여야 한다. 7) 유통 시 발생할 수 있는 무항생제축산물의 변성이나 부패방지를 위하여 임의로 합성물질을 첨가할 수 없다. 다만, 물리적 처리나 천연제제		

	는 무항생제축산물의 화학적 변성이나 특성을 변화시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다. 8) 무항생제축산물 포장재는 「식품위생법」의 관련 규정에 적합하고 급적 생물 분해성, 재생품 또는 재생이 가능한 자재를 사용하여 제작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9) 인증품 출하 시 인증품의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며, 포장재의 제작 및 사용량에 관한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10) 인증표시를 하지 않은 축산물을 인증품으로 판매할 수 없다. 다만, 2)의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계약된 유통자에게 생축으로 판매하는 경우 납품서, 거래명세서 또는 보증서 등에 표시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동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아. 가축분뇨의 처리	1) 가축사육 시 발생하는 가축분뇨는 완전히 부숙시킨 퇴비 또는 액비로 자원화하여 초지나 농경지에 환원함으로써 토양 및 식물과의 유기적 순환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2) 가축의 운동장에서는 가축의 분뇨가 외부로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청결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같은 법 제11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사육시설이 동 법령의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가축분뇨 퇴·액비는 표면수 오염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수준으로 사용하되, 장마철에는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자. 기타	1) 규칙 및 이 고시에서 정한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기준은 인증 유효기간동안 상시적으로 준수하여야 한다. 2) 규칙 및 이 고시에서 정한 무항생제축산물 인증기준을 준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